

# 음식업 취업자의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 I. 머리글

국제교역의 증가로 국경 간 노동력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영세중소업체 3D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여 2007년 9월 현재 취업사증을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 20만 6천명 포함)가 4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법무부, 2007. 9). 노동력의 국제이동은 송출국 뿐 아니라 유입국(host country)의 경제·사회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 인력의 연령, 학력수준, 기술수준, 체류목적, 체류기간에 따라 내국인 고용 및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유입은 내국인 실업증가와 근로조건 하락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외국인력 유입과 관련한 노동경제학적 분석을 보면 외국인력 유입과 임금 또는 고용 사이에 관한 경험적 증거는 명료하지 않으며 통계적 상관성 또한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된 대부분의 계량경제학적 연구를 보면 특정 집단을 제외하면 외국 인력의 유입이 자국 근로자의 소득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연구들은 외국인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근로자들 자신만 제외하고는, 또는 유럽의 경우 보유기술이 거의 없는 일부집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부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이규용 외, 2006).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실업 간에도 명백한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일부 실업률이 높고 장기실업이 만연한 유럽국가의 경우는 예외이겠지만, 기존 연구를 통해 볼 때 외국인력 유입과 고용 및 임금 간에 체계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국가가 외국 인력을 유입할 때 자국 노동시장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 한에서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보면 1993년 11월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과 함께 외국인력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지만 저숙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업종과 사업장규모 기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총정원 관리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 총수를 통제하였다. 2007년 현재 일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내국 인력이 취업을 꺼리는 3D업종의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례고용허가제에 의해 국적동포에게는 중소제조업체 외에 일부

서비스업과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국적동포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음식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가사간병업 등인데 이중 국적동포들은 건설업, 음식업에 많이 취업해있다. 건설업과 음식업은 취약계층이 진입하기 용이한 대표적인 업종임을 고려하면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내국인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고용허가제 3주년 평가결과를 보면 국적동포의 취업을 허용한 일부 업종 특히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노동시장의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이 그 증거이다(유길상 외, 2007. 10).

음식업의 경우에도 국적동포의 진입이 내국인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실제 과거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주된 인력이 40~50대의 내국인 여성이었으나 최근 들어 대부분 국적동포로 교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음식점 사용자가 인건비절감을 목적으로 내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국적동포로 교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점 생산성으로 인해 임금상승률이 낮았고 이것이 내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억제하고 유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외국인노동자가 내국인노동자가 떠난 빈 자리를 차지하였을 가능성이다<sup>1)</sup>.

이 글은 음식점 취업자의 노동이동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과거 음식점에 종사하던 내국 인력이 이후 어떤 노동이동을 경험하였는지, 이들의 취업업종 및 임금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이용해 음식점종 사업체 및 종사자수, 월평균임금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음식점 고용구조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고용보험DB를 이용해 2000년 당시 음식점 취업자들의 이후의 노동이동 과정을 분석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음식점에 종사하고 있는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였다면 어떤 업종으로 이동하였는지, 이동한 업종에서의 고용지속기간, 임금수준 등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음식점 이직이 자발적인 사유였는지 아니면 비자발적인 사유였는지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음식점 노동시장 구조를 살펴보고 2000년 당시 음식점에 종사하고 있던 취업자들의 이후의 노동이동 과정을 추적한다.

1) 경향신문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음식점 10곳 중 7곳이 국적동포를 고용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2007. 10. 5). 음식점 취업자의 월평균임금이 120~130만원에 이르지만 근로시간이 12시간(오전 11시~오후 11시)에 이르고 한 달 평균 휴일이 3일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편인데, 음식점 사업장에서 내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신문기사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 II. 음식업 노동시장 추이<sup>2)</sup>

### 가. 사업체 및 종사자수 추이

음식업종 사업체 분포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를 이용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이용해 음식업(일반음식점업 및 기타 음식점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보면 2005년 일반음식점업 및 기타음식점업 사업체는 총 411,743개소이며, 총 종사자수는 1,162천명이다. 2001년 대비 사업체수는 3.2%, 종사자수는 7.9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 기간 전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수(사업체수: 2001년 3,046,554개소 → 2005년 3,204,809개소; 종사자수: 2001년 14,109,641명 → 2005년 15,147,471명) 증가율(사업체 5.2%, 종사자수 7.4%)과 비교해보면 사업체수 증가폭이 소폭 높았다.

음식업체는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42.1%)에 위치하며 사업장규모는 30인 미만이 99.8%이다. 이중 5인 미만 사업장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88.9%에 이르고 있다. 음식업 세분류별 분포를 보면 일반 음식점업에서는 한식점과 중식점의 비중이 높고 기타 음식점업에서는 분식 및 김밥전문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업종별 추이를 보면 한식점은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음식점업은 5년 동안 1%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또한 2001년 전체 음식업의 6.8%에 그쳤던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이 2005년에는 8.0%로 증가하여 패스트푸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업 사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2001년 2.70명 → 2003년 2.71명 → 2005년 2.82명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소폭씩 증가하고 있지만 비교적 소규모이다. 업종별로 보면 기타 음식점은 2명 내외이고 일반 음식점업은 업종별로 고용인원 규모에 차이가 있다. 사업체의 평균 기업연령은 4.87년으로 나타났다<sup>3)</sup>.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이용해 음식업 기업연령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05년 현재 1년 미만 사업장이 26.5%, 2~3년 27.4% 그리고 10년 이상 된 음식점은 13.8%로 나타났다.

2) 통계청 표준산업코드에 의해 음식업은 일반 음식점업(5521), 기타 음식점업(5522), 주점업(5523), 다과점(5524)의 4가지 세부업종으로 분류된다. 2005년 현재 음식업 사업체는 총 577,034개소에 1,550,654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업 세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를 보면 일반음식점업(사업체: 316,241개, 종사자: 928,090명; 기타 음식점업(사업체: 95,502개, 종사자: 233,843명); 주점업(사업체: 130,498개, 종사자: 305,683명); 다과점업(사업체: 34,793개; 종사자: 83,038명)이다.

그러나 현재 특례고용허가제에 의해 국적동포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음식업은 일반 음식점업과 기타 음식점업이므로 음식업 노동시장 구조분석은 이들 2개 업종만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을 밝힌다.

3)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05년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전국 음식점은 모두 56만 5,929곳이다. 이중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음식점은 4만 1,287곳으로 전체의 7.3%에 불과하며 5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음식점까지 포함해도 20%에 이르지 못하였다. 전체 음식점 가운데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 안에 장사를 그만둔 곳이 12.1%였고, 1년을 지속한 음식점은 전체의 25.6%에 불과했다. 다른 자영업인 이미용실과 세탁소 등 기타서비스업(14.7%), 숙박업(16.7%) 등의 10년 이상 존속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편이다(한겨레신문, 2007. 2. 8). 이는 음식업은 자영업시장 유출입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주로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표 1> 음식업 사업체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개소, %, 명)

		2001			2003			2005		
		사업체		전체고용 인원	사업체		전체고용 인원	사업체		전체고용 인원
		개소	%		개소	%		개소	%	
지역	수도권	163,228	40.9	504,221	174,083	41.4	533,829	173,285	42.1	555,389
	영남	124,680	31.2	298,989	130,847	31.1	318,603	125,436	30.5	314,284
	호남	42,535	10.7	106,696	43,814	10.4	111,539	41,780	10.1	110,427
	충청	43,776	11.0	107,785	46,326	11.0	115,994	45,803	11.1	119,479
	기타	24,769	6.2	58,935	25,816	6.1	62,369	25,439	6.2	62,354
규모	30인 미만	398,116	99.8	1,026,893	419,975	99.8	1,095,156	410,809	99.8	1,114,591
	30~99인	827	0.2	35,932	869	0.2	38,790	895	0.2	41,025
	100~299인	41	0	6,280	36	0	5,062	37	0	5,322
	300인 이상	4	0	7,521	6	0	3,326	2	0	995
업종	한식	255,272	64.0	662,470	277,136	65.8	716,925	272,867	66.3	740,920
	중식	26,705	6.7	78,992	25,080	6.0	75,892	23,279	5.7	73,218
	일식	6,241	1.6	29,581	5,067	1.2	25,728	5,032	1.2	25,540
	양식	15,559	3.9	60,544	13,991	3.3	57,575	10,957	2.7	54,561
	기관구내식당업	2,463	0.6	23,039	2,849	0.7	25,459	3,391	0.8	28,907
	기타일반음식점업	1,297	0.3	5,891	636	0.2	4,252	715	0.2	4,944
	파자햄버거치킨전문점	27,226	6.8	87,950	32,534	7.7	101,628	32,979	8.0	97,167
	분식김밥전문점	56,508	14.2	109,313	60,509	14.4	123,890	57,295	13.9	121,224
기타음식점업	7,717	1.9	18,846	3,084	0.7	10,985	5,228	1.3	15,452	
전체		398,988	100.0	1,076,626	420,886	100.0	1,142,334	411,743	100.0	1,161,933

자료: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 원자료, 각년도.

<표 2> 음식업 사업체의 평균고용인원 및 기업연령

(단위: 세, 명)

		2001년		2003년		2005년	
		기업연령	평균고용인원	기업연령	평균고용인원	기업연령	평균고용인원
일반	한식	4.31	2.60	4.69	2.59	5.07	2.72
	중식	5.00	2.96	5.66	3.03	6.14	3.15
	일식	3.35	4.74	4.11	5.08	3.80	5.08
	양식	2.90	3.89	3.41	4.12	3.71	4.98
	기관구내식당업	6.33	9.35	5.48	8.94	5.91	8.52
	기타일반음식점업	4.28	4.54	4.64	6.69	3.86	6.91
기타	파자햄버거치킨전문점	3.28	3.23	3.72	3.12	3.92	2.95
	분식김밥전문점	3.62	1.93	4.05	2.05	4.31	2.12
	기타음식점업	4.53	2.44	5.26	3.56	3.91	2.96
전체		4.13	2.70	4.54	2.71	4.87	2.82

자료: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 원자료, 각년도.

## 나. 음식업 취업자 고용구조

사업체기초통계는 음식업 사업장 및 전체 종사자 숫자만 제시하고 있어 음식업 취업자의 고용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음식업 취업자의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sup>4)</sup>를 활용하였다. 고용구조를 살펴보기에 앞서 2005년을 기준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상의 사업체수 및 종사수를 비교하면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의 사업체 및 근로자수가 각각 93.0%, 94.1% 수준이다. 음식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분포를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와 비슷한 분포임을 보여준다. 종사자수를 성별로 구분해보면 업종 특성상 여성근로자 비율이 68.5%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82.6%), 한식점업(69.2%), 중국 음식점업(72.8%), 분식 및 김밥전문점(76.1%) 등은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일본 음식점은 남성 비율이 59.8%에 이르고 피자햄버거 및 치킨전문점(47.6%), 기타 일반음식점업(45.9%), 서양 음식점업(44.5%)은 상대적으로 남성 근로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음식업 사업장 규모 및 사업장 형태별 분포는 부표 1~2 참조 요).

<표 3> 2005년 음식업 사업체 및 종사자수(2005)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개소 (%)	계 (%)	남자 [%]	여자 [%]	금액 (%)
총계	383,057 (100.0)	1,093,273 (100.0)	344,237 [31.5]	749,036 [68.5]	35,811,310 (100.0)
일반 음식점업	295,266 (77.1)	871,848 (79.7)	268,340 [30.8]	603,508 [69.2]	29,011,119 (81.0)
· 한식점업	254,784 (66.5)	695,062 (63.6)	188,785 [27.2]	506,277 [72.8]	21,639,214 (60.4)
· 중국 음식점업	21,932 (5.7)	68,906 (6.3)	41,237 [59.8]	27,669 [40.2]	1,914,501 (5.3)
· 일본 음식점업	4,628 (1.2)	23,849 (2.2)	10,622 [44.5]	13,227 [55.5]	1,047,728 (2.9)
· 서양 음식점업	10,034 (2.6)	51,226 (4.7)	20,697 [40.4]	30,529 [59.6]	2,080,277 (5.8)
· 기관 구내식당업	3,238 (0.8)	28,293 (2.6)	4,929 [17.4]	23,364 [82.6]	2,123,207 (5.9)
· 기타 일반 음식점업	660 (0.2)	4,512 (0.4)	2,070 [45.9]	2,442 [54.1]	206,192 (0.6)
기타 음식점업	87,791 (22.9)	221,425 (20.3)	75,897 [34.3]	145,528 [65.7]	6,800,191 (19.0)
· 피자햄버거치킨전문점	30,585 (8.0)	94,684 (8.7)	45,052 [47.6]	49,632 [52.4]	3,135,912 (8.8)
· 분식김밥전문점	52,553 (13.7)	112,053 (10.2)	26,814 [23.9]	85,239 [76.1]	2,707,571 (7.6)
· 그외기타음식점업	4,653 (1.2)	14,688 (1.3)	4,031 [27.4]	10,657 [72.6]	956,708 (2.7)

주: ( )는 업종별 비중이고 [ ]는 성별 비중임.

자료: 통계청, 2005년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음식업종 매출액은 2005년 현재 35조 8천억 원이며 일식 및 양식, 기관 구내식당업이 사

4)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의 종합적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사업체 창설년월,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영업기간, 사업장 건물면적, 사업실적(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는 매 5년 마다 실시하는 총사업체통계조사와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자료는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된 것이다.

업체수 비중에 비해 매출액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1인당 매출액은 평균 32.8백만원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 비교해보면 기관 구내식당업(75.0백만원), 그외 기타 음식점업(65.1백만원)은 1인당 매출액이 높지만 분식 및 김밥전문점(24.2백만원), 중국 음식점업(27.8백만원), 한식점업(31.1백만원)은 1인당 매출액이 3천만원 내외에 그쳐 규모가 매우 영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음식점업이 2~3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운영되는 영세업체이며 99%가 개인사업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업 취업자의 임금수준, 근속기간 등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이하 OES) 1~6차년 자료를 분석하였다<sup>5)</sup>. 아래의 <표 4>를 보면 음식점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전체 종사자수가 193만명에 이르고 있다. 사업체기초통계나 서비스업통계조사에 비해 종사자수가 66% 가량 더 많은 셈인데, OES는 주점업과 다과점업 종사자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점 취업자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와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 주점업과 다과점업 종사자를 집계해보면 35~38만명 내외<sup>6)</sup>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고려하더라도 OES는 음식점 취업자가 34~36%정도 많다.

먼저 음식점 취업자의 인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70%로 서비스업통계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음식점취업자의 평균학력이 11.3년에 불과했고 학력범주로 구분해보면 고졸자가 55.5%, 중졸 이하자 33.3%로 고졸이하가 전체 음식점 취업자의 90%에 이른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은 10.7%에 그쳐 대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이한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졸자 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평균연령은 44.8세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41.1%, 50세 이상이 31.2%로 40대 이상이 72.3%에 이른다. 연령분포 추이를 보면 2001년에는 40세 이상이 58.6%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68.4%, 2005년 72.3%로 시간이 흐를수록 음식점 취업자의 고령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한편, 음식점 취업자의 평균근속은 4.2년, 평균경력은 6.0년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업자의 사업장 특성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음식점 취업자의 97.5%에 이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 5인 미만 사업장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 5) 한국고용정보원의 OES는 산업 3자리까지만 분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 음식점 취업자는 일반 음식점업(5521), 기타 음식점업(5522), 주점업(5523), 다과점(5524)이 모두 포함된 수치임을 밝힌다.
- 6) 사업체기초통계에서는 주점업 305,683명, 다과점업 83,038명으로 총 388,721명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는 주점업 277,405명, 다과점업 77,149명으로 총 351,554명으로 집계되었다.
- 7) 산업별 생산·단순노무직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1985년 30세 전후에서 2005년 40세 전후로 지난 20년 동안 평균연령이 10여년 가량 상승하였다.

<표> 산업별 생산·단순노무직 근로자의 평균연령의 변화

	1985	1990	1995	2000	2005
전산업	29.2	32.4	37.2	39.2	41.9
제조업	27.7	31.2	35.1	37.1	38.7
건설업	34.2	36.0	38.0	38.0	41.8
음식숙박업	34.9	34.5	39.5	41.9	44.6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표 4> 음식업 취업자의 인적·사업장특성별 분포 및 월평균임금 추이

(단위: 명, %, 만원)

		2001			2003			2005		
		명	%	평균임금	명	%	평균임금	명	%	평균임금
성	남자	519,920	29.1	170.9	550,485	30.1	190.6	561,721	29.1	186.3
	여자	1,263,902	70.9	105.8	1,280,300	69.9	109.8	1,370,273	70.9	113.0
학력	중졸이하	731,233	41.0	104.7	675,439	36.9	111.1	643,995	33.3	108.0
	고졸	841,104	47.2	134.6	902,670	49.3	141.6	1,072,848	55.5	143.0
	전문대졸이상	211,485	11.9	167.2	242,533	13.2	182.0	206,598	10.7	196.2
연령	30세미만	199,811	11.2	99.5	175,720	9.6	107.9	155,020	8.0	109.0
	30-39세	375,038	21.0	146.8	393,675	21.5	152.1	376,410	19.5	150.5
	40-49세	680,764	38.2	127.0	744,248	40.7	142.3	793,176	41.1	146.0
	50-59세	292,782	16.4	115.0	403,275	22.0	130.3	472,169	24.4	132.9
	60세이상	71,929	4.0	113.2	104,376	5.7	109.6	130,618	6.8	101.0
지역	수도권	813,550	45.6	135.8	861,475	47.1	155.6	917,952	47.5	149.1
	영남	507,119	28.4	112.2	566,909	31.0	112.7	567,133	29.4	119.5
	호남	179,097	10.0	117.2	163,670	8.9	118.0	179,564	9.3	134.7
	충청	208,540	11.7	125.8	152,980	8.4	128.0	177,627	9.2	127.9
	기타	75,515	4.2	137.3	85,752	4.7	133.5	89,718	4.6	138.5
규모	30인 미만	1,734,380	97.2	126.3	1,783,638	97.4	135.6	1,884,609	97.5	136.4
	30-299인	31,464	1.8	135.5	35,626	1.9	165.0	40,074	2.1	158.0
	300인 이상	6,889	0.4	190.4	3,908	0.2	125.4	4,473	0.2	146.8
근속	1년 미만	605,353	33.9	108.1	400,766	21.9	104.1	382,006	19.8	103.5
	1-3년	483,990	27.1	133.6	608,831	33.3	135.6	609,003	31.5	131.3
	3-5년	236,753	13.3	138.7	304,370	16.6	148.7	359,668	18.6	149.1
	5-10년	248,430	13.9	134.3	271,528	14.8	158.7	309,261	16.0	167.1
	10년 이상	201,219	11.3	148.4	236,038	12.9	158.3	268,341	13.9	157.7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	660,570	37.0	91.0	701,097	38.3	102.5	716,135	37.1	102.6
	비임금 근로자	1,123,252	63.0	154.2	1,129,689	61.7	165.5	1,215,859	62.9	167.0
종사 상지 위	정규직	-	-	-	284,854	15.6	121.8	289,482	15.0	127.2
	비정규직	-	-	-	416,242	22.7	89.1	426,654	22.1	86.0
	고용주	-	-	-	225,758	12.3	239.1	285,143	14.8	224.8
	자영업자	-	-	-	598,849	32.7	138.3	580,354	30.0	139.3
	무급 가족종사자	-	-	-	305,081	16.7	-	350,362	18.1	-
전 체		1,783,822	100.0	126.5	1,830,785	100.0	136.1	1,931,995	100.0	136.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1~6차년 원자료.

81.2%에 이른다. 사업장 위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47.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남 29.4%, 호남 9.3% 순이다. 취업자의 고용형태는 비임금 근로자가 63%수준이다. 근속년수는 2005년의 경우 1~3년이 3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전체 음식업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 미만 근속자이다. 2001년에는 1년 미만 근속자가 33.9%에 이르렀으나 2005년에는 19.8%로 감소한 반면 10년 이상 근속자는 2001년 11.3%에서 2005년 13.9%로 늘어나 시간이 흐를수록 장기근속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종사상지위로 구분해보면 자영자가 30.0%, 무

급가족종사자 18.1%, 고용주 14.8% 순이다. 임금근로자인 경우 정규직이 40.4%, 비정규직 59.6%이다. 음식업 취업자의 사업장 특성을 통해 볼 때 대다수의 음식업 취업자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며 음식점은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1~2명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음식업 취업자의 월평균임금을 보면 2001년 126.5천원, 2003년 136.1만원, 2005년 136.9만원이다. 임금상승률을 보면 2003년의 경우 2001년 대비 7.6%, 2005년은 2003년 대비 0.6%증가에 그쳐 동 기간 비농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그 상승률이 매우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인적 및 사업장 특성별로 월평균임금을 비교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65%가량 높아 성별간 임금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자 대비 고졸자는 32.4%, 전문대졸 이상자는 81.7%가 많아 학력수준별 격차도 높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50.5만원으로 가장 많다.

사업장 특성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 136.4만원, 30~299인 사업장 158.0만원, 300인 이상 사업장 146.8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근속년수별로 평균임금을 비교해보면 1년 미만근속자가 103.5만원으로 가장 낮고 5~10년 근속자는 167.1만원으로 가장 높다. 2003년과 2005년 임금수준을 비교해보면 임금인상이 담보상태여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임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개년 주당근로시간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2003년 64.75시간 → 2005년 64.55시간) 근속이 짧은 취업자의 경우 오히려 월평균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 102.6만원, 비임금근로자 167.0만원이며 종사상지위별로는 고용주가 224.8만원으로 가장 높고, 비정규직이 86.0만원으로 가장 낮다. 마지막으로 주당 근로시간은 64.7시간으로 나타나 전 산업 평균 주당근로시간 53.0시간에 비해 22.1%가 길었다.

이상을 통해볼 때 음식업 취업자는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지 않으며 임금상승률도 매우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은 전산업 평균에 비해 22.1%가 길다. 음식업취업자가 대부분 30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근무함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음식업 취업자의 대다수가 저학력의 고령자 비중이 높고 신규 청년층 노동력의 유입이 낮았다. 특이한 점은 음식업 취업자의 평균 근속이 4.2년인 반면 경력은 6.0년에 불과하였는데 음식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을 고려할 때 업종간 노동이동 비율이 매우 높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국적동포 취업업종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식업 일자리의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계로 음식점업은 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많은 국적동포가 대체하고 있다. 노동력수요동향조사에 따르면 2005년 음식점업 노동력부족률은 4.0으로 전산업 평균 3.1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음식점업의 노동력부족률이 높은 것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8) 우리나라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비농 전산업 임금총액은 2001년 1,825천원, 2003년 2,228천원, 2005년 2,525천원이다. 3개년의 명목임금 상승률을 구해보면 2003년은 2001년 대비 22.1%, 2005년은 2003년 대비 13.3% 상승하였다. 음식숙박업 임금총액은 2001년 1,336천원, 2003년 1,615천원, 2005년 1,781천원으로 동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은 각각 20.9%, 10.3%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7) 한편 제5차년도(2006년) OES에서 전 산업 월평균 임금은 175.4만원으로 집계되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06).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 및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국적 동포의 경우 2002년 11월 취업관리제 의거해 합법적으로 취업을 허용하였다. 이 제도는 동포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에 친척, 호적이 있는 2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에게 고용지원센터의 소개를 받아 취업이 가능케 하였는데, 취업허용 업종은 음식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이며 최대 3년간 취업활동을 허용하였다. 취업관리제는 2004년 7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고용허가제 특례제도로 통합되었다.

정부는 2007년 3월 특례고용허가제를 방문취업제(H-2)로 개선하여 입국 허용인원 및 취업업종을 확대하고 국내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외에 일부 서비스업에 추가되었고 5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 최장 3년간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방문취업제의 도입은 국적동포의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고용허가제 하에서 취업허용 업종을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 5>는 2007년 5월 현재 고용허가제에 의해 입국한 저숙련 인력의 취업업종별 분포로 서비스업 취업자가 3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업 취업자의 80%가량이 음식업에 취업해 있다. 여기에 2007년 9월 현재 불법체류자(206,029명) 중 중국국적동포가 28,519명인데(법무부, 2007. 10), 이중 약 40%가 음식업종에 취업해있다고 간주할 경우 약 37천명 내외의 국적동포가 음식업종에 취업해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sup>9)</sup>. 이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준에 의거해 음식업 취업자를 1백만 명으로 간주할 경우 약 3.7%내외 수준으로 음식업종 노동력부족률(4.0)에 비교적 근접한 수준이다.

참고로 최근 실시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3주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업 취업자의 월평균임금은 112.3만원, 1일 근로시간은 10.7시간, 월 평균 휴일은 3.7일로 나타났다(유길상 외, 2007. 10). 앞에서 살펴본 OES 결과와 비교하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다소 떨어지는 수준이다.

중국국적동포를 포함한 외국 인력의 유입은 내국인 노동시장에의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외국 인력을 도입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하며, 외국인의 고용이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잠식하거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허가제에서는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의무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전체 쿼터와 업종별 쿼터, 업종별·기업규모별 내국인근로자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비율(dependency ratio) 등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춰 놓고 있다.

9) 지난 2002년 상반기에 정부가 실시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자료를 보면 불법체류자 취업업종 역시 합법 취업자의 업종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불법체류자 276천명중 93%인 256천명이 자진 신고하였는데, 전체 자진신고자의 56.3%가 재중동포였다. 불법체류자들이 취업한 업종은 제조업이 37.0%, 건설업 22.5%, 음식숙박업 15.5%순이었고 비제조업의 경우 중국동포가 전체 취업자의 50.1%를 차지하였다. 중국동포 중 남성은 주로 건설업 여성은 음식업에 취업하는 경향이 높는데 여성 불법취업자(86,568명) 중 음식숙박업(37.3%) 취업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조업(27.2%), 가사서비스업(10.6%), 건설업(7.1%) 순으로 나타났다(유길상 외, 2003). 여성 불법체류자 중 무응답자 13.04%를 고려하면 중국동포 중 음식업 취업자는 30~35%내외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불법체류자 역시 2002년 취업구조와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국적동포 불체자 중 적어도 30%내외는 음식업에 취업해 있을 개연성이 높다.

<표 5>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업종별 분포

(단위: 명, %)

	2004	2005	2006	2007						총 계	
				소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취업현황(총계)	7,095	60,473	79,199	15,426	2,998	2,368	3,323	3,376	3,361	162,193 (100.0)	
일반 고용 허가	소 계	3,167	31,659	28,976	9,234	1,627	1,483	2,113	2,007	2,004	73,036 (45.0)
	제조업	3,124	31,115	28,182	8,567	1,578	1,445	1,879	1,825	1,840	70,988 (97.2)
	건설업	-	84	42	15	-	-	-	15	0	141 (0.2)
	농축산업	43	419	700	623	49	35	229	165	145	1,785 (2.4)
	서비스업	-	41	52	7	-	3	3	1	0	100 (0.1)
	어업	-	-	-	22	-	-	2	1	19	22 (0.0)
특례 고용 허가	소 계	3,928	28,814	50,223	6,192	1,371	885	1,210	1,369	1,357	89,157 (55.0)
	제조업	-	-	9,426	3,169	551	315	582	826	895	12,595 (14.1)
	건설업	2,514	18,072	20,804	104	-	-	18	49	37	41,494 (46.5)
	농축산업	-	-	559	164	-2	-	78	52	36	723 (0.8)
	서비스업	1,414	10,742	19,422	2,745	822	570	529	436	388	34,323 (38.5)
	어업	-	-	12	10	-	-	3	6	1	22 (0.0)

주: 총계는 연도별 누적인원임.

자료: 노동부, 2007년 5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통계.

최근 실시한 고용허가제 3주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기 보다는 보완한다는 비율이 높아 기존의 연구결과(유길상 외, 2003; 이규용 외, 2007)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내국인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는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건설업의 경우 그 비율이 높았다(유길상 외, 2007. 10). 향후에도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국적동포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 Ⅲ. 음식업 취업자의 노동이동

#### 가. 자료구축방법

이 연구가 음식업 취업자의 노동이동을 추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노동부의 고용보험DB를 이용하였다. 고용보험DB는 행정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자료인 관계로 연구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직 및 이직시기, 이직사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원부DB와 이력DB를 인별로 연결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직업력(job history)을 구성할 수 있다. 고용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시기를 이용해 개별 노동자의 일자리 이동 행태를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 고용보험 사업장 DB를 결합시켜 사업장-노동자 연계패널자료를 구성할 경우 이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가 된다.

물론 고용보험DB가 갖는 한계도 존재한다. 일차적으로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에 한번이라도 가입한 경력이 있는 사업장 정보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대상이 빠르게 확대되어 1998년부터는 1인 이상 전사업장이 가입대상으로 되었지만 여전히 건설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은 고용보험 가입율이 낮다. 특히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음식업은 대부분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고 사업장 신설, 휴폐업이 빈번한 관계로 고용보험 가입율이 낮은 대표적인 업종 중의 하나이다. 둘째, 1998년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상용직에서 임시직까지 확대하였지만 사업장단위로 볼 때 종사상지위를 구분하는 것이 애매하고 어느 사업장은 일부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어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DB는 몇 가지 한계가 있어 고용보험DB가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고용보험DB를 활용하였는데, 이 연구가 일자리 창출·소멸률, 해고율 등 같은 노동시장 변화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별 노동이동을 살펴보는 데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DB를 활용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sup>10)</sup>. 더구나 개별 근로자의 노동이동을 살펴볼 수 있는 적합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도 주요한 요인이다. 물론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KLIPS)을 이용해 노동이동을 분석할 수 있지만 충분한 사례수 확보가 용이치 않아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자료구축방법은 먼저 고용보험 이력DB에서 인별 입직시기와 이직시기를 이용해 인별 직업력을 구축하였다. 전체 직업력에서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음식업에 취업해 있는 자를 추출한 후 이들이 2000년부터 2007년 7월까지 가졌던 일자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00년 7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음식업(일반음식점업과 기타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던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2000년 7월 1일 이후 시점에 음식업종에 진입한 취업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0년을 분석시점으로 한 것은 고용보험이 1998년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지만 고용보험DB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을 2000년 전후로 보기 때문이다. 인별 직업력을 구축한 후 취업사업장ID를 기준으로 사업장DB와 연결해 근로자-사업장 연계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연결패널을 구축한 결과 80,644명의 직업력이 구축되었다.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통해 집계된 2001년 전체 음식업 취업자(1,076,626명) 대비 약 7.5%에 그치고 있다.

#### 나. 노동이동 추이

음식업 취업자 노동이동 분석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전체 표본의 64.2%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0%, 30대 28.0%로 나타나는 등 40대 이상이 45.4%이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은 40세 미만이 79.1%에 이르지만 여성은 40세 이상이 59.0%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분포를 보면 30대까지는 성별 분포가 비슷하나 40세부터는 여성이 전체 음식업 취업자의 82~86%에 이르러

10) 음식업 취업자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취업해 있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음식업체가 안정성을 가진 업체중심으로 그리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단순노무직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표 6> 표본의 인적 및 사업장특성별 분포

(단위: 명 %)

		성		전체 (%)
		남 (%)	여 (%)	
연령	30세미만	11,087 ( 38.4)	10,400 ( 20.1) [48.4]	21,487 ( 26.6)
	30대	11,730 ( 40.7)	10,858 ( 21.0) [48.1]	22,588 ( 28.0)
	40대	4,292 ( 14.9)	19,890 ( 38.4) [82.3]	24,182 ( 30.0)
	50세이상	1,736 ( 6.0)	10,651 ( 20.6) [86.0]	12,387 ( 15.4)
학력	고졸미만	2,439 ( 8.5)	12,888 ( 24.9) [84.1]	15,327 ( 19.0)
	고졸	19,367 ( 67.1)	31,060 ( 60.0) [61.6]	50,427 ( 62.5)
	전문대졸이상	4,610 ( 16.0)	5,357 ( 10.3) [53.7]	9,967 ( 12.4)
직종	관리직/(준)전문가	2,823 ( 9.8)	1,935 ( 3.7) [40.7]	4,758 ( 5.9)
	사무/판매직	19,901 ( 69.0)	35,196 ( 67.9) [63.9]	55,097 ( 68.3)
	기능/단순노무	6,121 ( 21.2)	14,668 ( 28.3) [70.6]	20,789 ( 25.8)
지역	서울	14,747 ( 51.1)	21,775 ( 42.0) [59.6]	36,522 ( 45.3)
	인천경기	5,340 ( 18.5)	8,880 ( 17.1) [62.4]	14,220 ( 17.6)
	충청	1,610 ( 5.6)	3,895 ( 7.5) [70.8]	5,505 ( 6.8)
	호남	1,474 ( 5.1)	3,997 ( 7.7) [73.1]	5,471 ( 6.8)
	영남	4,708 ( 16.3)	10,821 ( 20.9) [69.7]	15,529 ( 19.3)
	강원/제주	965 ( 3.3)	2,428 ( 4.7) [71.6]	3,393 ( 4.2)
업종	한식점업	9,305 ( 32.3)	24,980 ( 48.2) [72.9]	34,285 ( 42.5)
	중식점업	3,323 ( 11.5)	865 ( 1.7) [20.7]	4,188 ( 5.2)
	일식점업	2,258 ( 7.8)	2,083 ( 4.0) [48.0]	4,341 ( 5.4)
	양식점업	3,720 ( 12.9)	2,607 ( 5.0) [41.2]	6,327 ( 7.8)
	기관구내식당업	1,611 ( 5.6)	5,277 ( 10.2) [76.6]	6,888 ( 8.5)
	기타일반음식점업	1,107 ( 3.8)	1,358 ( 2.6) [55.1]	2,465 ( 3.1)
	피자,햄버거및치킨전문점	2,742 ( 9.5)	2,992 ( 5.8) [52.2]	5,734 ( 7.1)
	분식및김밥전문점	12 ( 0.0)	36 ( 0.1) [75.0]	48 ( 0.1)
	이동음식점업	2 ( 0.0)	3 ( 0.0) [60.0]	5 ( 0.0)
	그외기타음식점업	4,765 ( 16.5)	11,598 ( 22.4) [70.9]	16,363 ( 20.3)
	전 체	28,845 (100.0)	51,799 (100.0) [64.2]	80,644 (100.0)

주: 1) ( )는 범주별 비중이고 [ ]는 범주내 여성의 비중임.

2) 범주별 종합 차이는 무응답 때문임.

남성 취업자의 경우 40세를 전후로 음식업 이탈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62.5%로 가장 많고 고졸미만 19.0%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고졸이하가 81.5%에 이른다. 여성의 경우 중·고령자 비율이 높은 관계로 남성 취업자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은 편이다.

사업장 특성별로 보면 직종은 판매직의 비중이 높다. 판매직이 전체 취업자의 59.4%(47,914명)에 이르렀고 사무직과 판매직이 모두 68.3%에 이른다. 다음으로 기능직과

단순노무직 25.8%이고 관리직과 (준)전문직 5.9%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관리직과 (준)전문직 비중이 소폭 높고 여성은 기능 및 단순노무직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 사업장 소재

<표 7> 2000년 취업일자리 이직여부 및 평균 근속(월)

(단위: %, 개월)

		사업장이직여부				근속개월 (월)	사업장 이동횟수
		계속근무	이직사유				
			자발적이직	비자발적이직	고용조정에 의한이직		
성	남성	9.2	57.7	40.2	11.9	48.91	2.10
	여성	8.9	54.5	43.7	12.5	46.35	1.74
연령	30세 미만	6.9	71.3	27.2	7.6	35.64	2.31
	30대	8.9	55.5	42.8	12.0	46.45	1.85
	40대	10.9	49.2	48.9	14.5	51.55	1.67
	50세 이상	9.4	40.5	56.8	17.3	60.57	1.55
학력	고졸 미만	10.3	46.2	51.4	13.7	55.64	1.59
	고졸	6.7	55.5	43.0	11.3	39.27	1.89
	전문대졸 이상	11.3	69.1	28.6	10.9	39.44	2.22
직종	관리직/(주)전문가	11.5	53.8	43.1	15.3	58.16	1.92
	사무/판매직	9.2	57.7	40.5	11.6	45.74	1.90
	기능/단순노무	7.9	50.5	47.6	13.6	48.82	1.79
지역	서울	11.8	62.9	34.9	11.5	49.59	2.03
	인천경기	5.8	50.4	48.2	11.7	41.08	1.80
	충청	5.8	49.1	48.8	12.4	41.91	1.76
	호남	8.3	45.5	53.1	13.4	47.48	1.63
	영남	7.1	50.9	47.3	14.5	48.38	1.74
	강원/제주	8.2	51.7	46.6	11.0	51.47	1.68
업종	한식점업	7.3	48.7	49.4	12.0	47.66	1.65
	중식점업	6.5	51.8	46.0	6.8	43.26	1.74
	일식점업	4.2	52.5	45.7	8.9	36.55	1.80
	양식점업	5.4	58.0	39.9	13.0	38.90	2.21
	기관 구내식당업	18.3	74.9	24.1	12.4	40.51	2.10
	기타 일반음식점업	7.7	59.3	39.5	18.2	48.10	2.14
	피자,햄버거 및 치킨전문점	10.7	71.9	27.3	11.4	51.11	2.26
	분식 및 김밥전문점	4.2	60.9	37.0	6.5	52.25	1.35
	이동 음식점업	20.0	100.0	0.0	0.0	52.96	1.40
	그 외 기타 음식점업	11.8	58.0	39.4	14.5	54.90	1.98
	전 체	9.0	55.6	42.5	12.3	47.27	1.87

주: 근속개월에서 계속 근무자는 2007년 7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함.

지는 서울이 전체 취업자의 45.3%에 이르는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취업자의 62.9%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한식점이 전체 음식업 취업자의 42.5%를 차지하고 그 외 기타 음식점업도 20.3%로 비교적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성별로 취업업종을 비교해보면 한식점, 기관구내식당업, 분식 및 김밥전문점, 그 외 기타 음식점업은 여성비율이 높고, 중식점, 양식점, 일식점업은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를 통해볼 때 상대적으로 저학력·중고령 여성이 많이 취업해 있는 한식점과 분식 및 김밥 전문점의 고용보험 가입율이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식점이나 양식점처럼 비교적 사업장규모가 큰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음식업 취업자의 노동이동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2000년 7월 당시 취업해있던 일자리에서의 취업지속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2000년 당시 일자리에서 2007년 7월 현재까지 계속 취업해 있는 자는 7,279명(9.0%)에 불과해 이직을 경험한 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7 참조). 이직자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자발적 이직자가 55.6%이고 비자발적 이직자는 42.5%,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는 12.3%로 나타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자 비율이 매우 높았다<sup>11)</sup>. 이직자들의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보면 비자발적 이직자는 기타 개인사정이 54.6%로 가장 높았고 전직이나 자영업을 목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31.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는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가 65.3%로 가장 많았고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도 26.5%로 나타나 크게 2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특성별로 보면 남성일수록 취업이 지속된 비율이 높았고 이직한 경우 남성이 여성에

<표 8> 노동이동 횟수 분포

(단위: 명, %, 월)

	노동이동 경험자		평균근속		노동이동 경험자		평균근속
	명	%			명	%	
1회	80,644	100.0	47.27	9회	148	0.2	6.52
2회	37,050	45.9	18.02	10회	73	0.1	7.49
3회	17,926	22.2	14.64	11회	30	0.0	6.28
4회	8,521	10.6	12.37	12회	11	0.0	3.46
5회	4,006	5.0	10.91	13회	5	0.0	1.16
6회	1,801	2.2	9.43	14회	5	0.0	6.31
7회	764	0.9	8.77	15회	2	0.0	5.72
8회	327	0.4	7.59	전체	80,644	100.0	

주: 평균근속은 각 시점에서 2007년 7월까지 취업이 지속된 경우 2007년 7월 10일까지 근속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한 값임.

11)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2000년 기준 전체 이직자는 2,981.6천명이고 이중 비자발적 이직자는 23.2%(693.1천명),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295.4천명)는 9.9%이다(박성재, 2007. 7).

비해 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계속근무 비율이 높지만 이직을 경험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혹은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자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학력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자발적 이직 경향이 높다. 직종은 사무/판매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높아 이들은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종은 기관 구내식당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에서 계속 근무자비율이 8%미만이다.

위의 <표 8>은 표본의 노동이동 횟수 분포 및 각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이다. 표본에서 한 차례 이상 일자리를 이동한 경험이 있는 자는 45.9%(37,050명)로 나타났고, 최대 15회까지 직장을 이동한 경우도 2명 존재한다. 표본의 평균 사업장 이동횟수는 1.87회이다. 2000년 당시 첫 일자리의 평균근속은 47.3개월로 나타났으며 노동이동 경험횟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근속기간은 짧아지고 있다.

음식업 취업자의 노동이동을 살펴보기 위해 직업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관측된 일자리를 이용해 노동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먼저 2000년 음식업 취업자 80,644명 중 2000년 7월 시점에 가졌던 일자리를 2007년 7월 시점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7,279명)는 9.0%에 불과하고 45.9%는 1번 이상 노동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장 이동시 음식업종으로 재취업(19.3%)하기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경우(26.6%)가 더 많았는데, 산업이동을 경험한 경우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으로의 이동비율이 비교적 높았다(업종 및 직종간 노동이동은 부표3~4 참조 요). 그러나 36,315명(45.0%)은 2000년 7월 당시 가졌던 일자리 이탈 후 다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본 탈락하였다. 이들의 실제 재취업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표본탈락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편, 07년 현재 취업여부를 보면 80,644명 중 32,779(40.7%)가 2007년 7월 시점 현재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표본탈락율이 비교적 높음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취업중이더라도 음식업(14,260명)보다는 다른 업종(18,519명)에 취업해 있는 비율이 높았다<sup>12)</sup>. 2번째 일자리 근속기간을 음식업으로 진입한 경우(18.75개월) 타 업종으로 진입한 경우(17.41개월)를 비교해본 결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인적 특성별로 노동이동 현황을 비교해보면 먼저 여성의 경우 취업지속 비율은 소폭 낮지만 표본탈락 비율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여성은 학력수준이 낮고 고령자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연령별로는 고령자일수록 취업지속비율이 높았지만 동시에 표본탈락 비율도 높다. 그러나 연령이 낮은 자는 노동이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으며 노동이동시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학력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이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는데 노동이동시 다른 업종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은 편이다.

반면 저학력자는 노동이동을 하더라도 동종업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았고 표본탈락 비율도 고학력자와 큰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학력과 연령에 따라 노동이동 패턴이 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이병화·정재호(2005)가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이용해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1년 동안 의 직장을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경력변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산업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15.6%, 직업이동 경험자는 18.9%로 나타났다.

<표 9> 음식업 취업자의 노동이동

(단위: 명, %)

		2000년 취업자	노동이동							취업여부		
			00년 알자리지 속자	노동이동경험자				표본 탈락	07년 현재 취업자			
				전체	음식업				타업종	음식업	타업종	
				일반음식 업(%)	기타음식 업(%)	그외음식 업(%)						
성	남	28,845	9.2	55.2	34.7	7.4	0.9	56.9	35.5	19.8	28.1	
	여	51,799	8.9	40.8	31.7	9.1	0.6	58.6	50.3	16.5	20.1	
연령	30세미만	21,487	6.9	61.6	24.8	8.0	0.8	66.3	31.5	15.4	29.7	
	30대	22,588	8.9	45.7	36.1	7.5	0.8	55.7	45.4	17.8	22.6	
	40대	24,182	10.9	39.0	38.6	9.1	0.7	51.6	50.1	20.2	21.0	
	50세이상	12,387	9.4	32.8	39.1	9.9	0.7	50.3	57.8	16.6	15.8	
학력	고졸미만	15,327	10.3	34.6	38.8	8.9	0.5	51.9	55.1	18.1	17.4	
	고졸	50,427	6.7	47.2	35.6	7.6	0.8	56.0	46.1	15.5	22.6	
	전문대졸이상	9,967	11.3	57.7	21.6	9.5	0.7	68.1	31.0	20.4	30.8	
직종	관리직/(주)전문가	4,758	11.5	48.8	33.2	8.6	0.8	57.4	39.8	21.1	25.9	
	사무/판매직	55,097	9.2	46.8	33.4	8.2	0.8	57.7	43.9	18.0	23.0	
	기능/단순노무	20,789	7.9	42.9	31.9	8.9	0.6	58.5	49.2	16.1	22.3	
지역	서울	36,522	11.8	51.1	33.8	9.2	0.8	56.2	37.1	22.6	26.4	
	인천경기	14,220	5.8	43.9	37.3	6.9	0.7	55.0	50.4	13.6	20.1	
	충청	5,505	5.8	41.9	32.1	6.8	0.5	60.6	52.2	13.4	21.0	
	호남	5,471	8.3	37.3	32.3	7.0	0.7	60.0	54.3	14.8	18.3	
	영남	15,529	7.1	41.6	27.6	8.9	0.8	62.7	51.3	13.4	20.9	
	강원/제주	3,393	8.2	39.5	30.5	5.5	0.8	63.2	52.3	13.5	17.8	
업종	한식점업	34,285	7.3	38.0	45.7	4.3	0.7	49.4	54.8	15.2	17.4	
	중식점업	4,188	6.5	39.1	45.4	2.1	0.4	52.1	54.4	13.8	16.2	
	일식점업	4,341	4.2	46.1	61.1	3.6	0.6	34.6	49.7	13.9	17.1	
	양식점업	6,327	5.4	57.7	29.5	5.5	1.9	63.1	36.9	14.0	26.4	
	기관 구내식당업	6,888	18.3	54.9	28.0	8.8	0.2	63.0	26.8	30.8	32.6	
	기타 일반음식점업	2,465	7.7	57.6	30.3	6.3	0.5	62.9	34.7	17.6	30.0	
	파자빔버거차킨전문점	5,734	10.7	58.4	13.5	15.6	1.0	69.9	30.9	19.1	31.5	
	분식 및 김밥전문점	48	4.2	27.1	38.5	23.1	0.0	38.5	68.8	8.3	12.5	
	이동 음식점업	5	20.0	20.0	100.0	0.0	0.0	0.0	60.0	20.0	0.0	
	그외 기타 음식점업	16,363	11.8	50.0	15.8	15.8	0.7	67.8	38.2	20.3	28.5	
	전 체		80,644 (100.0)	7.279 (9.0)	37,050 (45.9)	12,233 [33.0]	3,099 [8.4]	279 [0.8]	21,439 [57.9]	36,315 (45.0)	14,260 (17.7)	18,519 (23.0)

주: 1) 그 외 음식업은 주점업과 다과점업을 의미함.



<표 10> 2번째 일자리의 취업업종별 월평균임금

(단위: 명, 원)

		평균임금	사례수			평균임금	사례수
구분	음식업종 재취업	1,053,164.5	16,794	업종	금융 및 보험업	1,038,723.9	305
	다른 업종 재취업	1,005,085.5	20,256		부동산 및 임대업	1,008,463.9	679
업종	농림어업	993,564.2	82		사업서비스업	854,862.0	4,315
	광업	929,552.3	16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행정	682,889.7	328
	제조업	954,073.4	4,844		교육서비스업	1,063,482.3	91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182,841.2	2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00,816.5	839
	건설업	1,141,360.1	848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1,528,355.5	501
	도매 및 소매업	1,154,665.8	3,753		기타공공수리 및 개선회사서비스업	1,038,663.3	1,011
	숙박 및 음식점업	1,064,670.4	17,588		가사 서비스업	538,934.3	7
	운수통신업	899,553.2	996		국제 및 외국기관	670,000.0	1
					전 체	1,026,878.7	37,050

다음으로 직종별 노동이동 현황을 보면 관리직이나 (주)전문가일수록 취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지만 동시에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다. 그러나 기능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취업 지속비율은 낮고 표본탈락비율은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지역 소재 업체 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속 비율도 높고 노동이동 경험 비율도 동시에 높았다. 반면 표본탈락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15%p가량 낮다. 마지막으로 업종을 보면 기관 구내식당업 취업자의 취업지속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식점, 중식점업 등 일반 음식점업 취업자는 취업지속 비율이 4~7%에 불과하여 이들은 잦은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표를 보면 실제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비율은 낮고 오히려 표본탈락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이동 경험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2번째 일자리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sup>13)</sup>. 2번째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는 자는 모두 37,050명인데 이중 음식업으로 재취업한 자는 16,794명(45.3%)이고 나머지 20,256명(54.7%)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였다. 임금수준은 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 하였다. 기초통계를 보면 음식업종으로 재취업한 경우 월평균임금은 105만원내외로 나타났고 다른 업종으로 이동한 경우는 1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음식업종에 취업한 경우 임금수준이 5%가량 높았다. 업종별로 비교해보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이 임금수준이 가장 높다. 음식업 취업자가 비교적 많이 진입하는 업종인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기타공공수리 및 도소매업의 경우 도소매업만 음식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았다.

13)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청 시 월평균임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입직시점의 임금을 비교할 수 있다.

#### IV. 결론

이 글은 국적동포가 많이 취업해 있는 음식업을 대상으로 국적동포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목적으로 이뤄졌다. 사업체기초통계, 서비스업통계조사 및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활용해 음식업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를 살펴본 후 고용보험 DB를 이용해 음식업 취업자의 노동이동을 및 취업업종 등을 살펴보았다. 고용보험DB가 전체 음식업 취업자의 7~8%내외만 포괄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분석 결과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음식업 취업자는 다른 업종에 비해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옮기는 비율이 높았다. 2000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이직을 경험한 자 중 비자발적 사유로 노동이동을 경험한 비율이 23.2%에 그치고 있지만 음식업은 42.5%로 무려 2배에 가까운 격차가 있다. 특히 저학력의 중고령 여성이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노동이동을 경험하더라도 음식업으로 재취업하기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이병희·정재호(2005)연구결과를 보면 산업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이 15.63%에 불과하였지만 음식업종 취업자는 그 비율이 무려 57.9%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이동을 경험하더라도 동종 업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고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낮은 편인데 음식업의 경우 동종업종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이동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음식업 특성상 비교적 장시간 근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노동이동업종 분석을 통해 음식업 취업자가 노동이동을 통해 임금수준이 보다 떨어지는 업종(가사간병 같은 사회서비스업 일자리)으로 이동할 경우 국적동포 유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재)취업업종 분포를 볼 때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한 분석은 향후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동이동을 거치면서 표본 탈락하는 비율이 높았다. 음식업 취업자의 표본탈락율이 45.0%에 이른 것은 음식업이 대부분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관계로 휴·폐업이 잦고 그만큼 고용유연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저학력의 중고령 여성과 단순노무직은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표본 탈락율도 높아 현재 어느 업종에 취업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표본탈락이 곧 노동시장 이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음식업 탈락자들의 현재 취업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적동포가 많이 취업해 있는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국적동포 유입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초통계를 통해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음식업 취업자의 높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노동이동이 국적동포 유입 때문인지 아니면 음식업 산업특성에서 연유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또한 음식업 취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것 역시 높은 표본 탈락율로 추정이 어려웠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내국인근로자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표 1] 사업장규모별 분포(2005)

(단위: 개소, %, 명, 백만원)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계		남자		여자			
	개소	%	명	%	명	%	명	%	금액	%
일반 음식점업	295,266	100.0	871,848	100.0	268,340	100.0	603,508	100.0	29,011,119	100.0
· 1명	56,512	19.1	56,512	6.5	3,719	1.4	52,793	8.7	1,464,325	5.0
· 2~4	202,123	68.5	519,160	59.5	167,422	62.4	351,738	58.3	14,167,637	48.8
· 5~9	30,512	10.3	183,963	21.1	56,608	21.1	127,355	21.1	7,178,608	24.7
· 10~19	4,698	1.6	59,603	6.8	21,101	7.9	38,502	6.4	2,954,822	10.2
· 20~49	1,160	0.4	32,892	3.8	12,382	4.6	20,510	3.4	1,965,251	6.8
· 50~99	233	0.1	15,071	1.7	5,156	1.9	9,915	1.6	950,454	3.3
· 100명 이상	28	0.0	3,232	0.4	1,174	0.4	2,058	0.3	188,654	0.7
기타 음식점업	87,791	29.7	221,425	25.4	75,897	28.3	145,528	24.1	6,800,191	23.4
· 1명	29,250	9.9	29,250	3.4	2,878	1.1	26,372	4.4	702,313	2.4
· 2~4	52,065	17.6	123,903	14.2	47,012	17.5	76,891	12.7	3,028,639	10.4
· 5~9	4,530	1.5	27,144	3.1	8,578	3.2	18,566	3.1	888,221	3.1
· 10~19	1,188	0.4	16,165	1.9	7,178	2.7	8,987	1.5	702,286	2.4
· 20~49	687	0.2	19,875	2.3	8,460	3.2	11,415	1.9	960,263	3.3
· 50~99	61	0.0	3,668	0.4	1,255	0.5	2,413	0.4	390,381	1.3
· 100~199	10	0.0	1,213	0.1	506	0.2	707	0.1	116,772	0.4

자료: 통계청, 2005년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부표 2] 사업장형태별 분포(2005)

(단위: 개소, %, 명, 백만원)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계		남자		여자			
	개소	%	명	%	명	%	명	%	백만원	%
일반 음식점업	295,266	100.0	871,848	100.0	268,340	100.0	603,508	100.0	29,011,119	100.0
· 개인사업체	292,265	99.0	819,708	94.0	251,610	93.8	568,098	94.1	25,312,312	87.3
· 회사법인	2,818	1.0	49,640	5.7	16,182	6.0	33,458	5.5	3,552,741	12.2
- 주식회사	2,728	0.9	47,238	5.4	15,317	5.7	31,921	5.3	3,404,815	11.7
- 유한회사	72	0.0	2,127	0.2	778	0.3	1,349	0.2	129,423	0.4
- 합자·합명회사	18	0.0	249	0.0	81	0.0	168	0.0	18,254	0.1
· 회사이외법인	172	0.1	2,440	0.3	540	0.2	1,900	0.3	144,720	0.5
· 비법인단체	11	0.0	60	0.0	8	0.0	52	0.0	1,346	0.0
기타 음식점업	87,791	100.0	221,425	100.0	75,897	100.0	145,528	100.0	6,800,191	100.0
· 개인사업체	86,286	98.3	189,632	85.6	62,515	82.4	127,117	87.3	4,834,186	71.1
· 회사법인	1,495	1.7	31,592	14.3	13,314	17.5	18,278	12.6	1,945,148	28.6
- 주식회사	1,470	1.7	31,157	14.1	13,141	17.3	18,016	12.4	1,922,963	28.3
- 유한회사	18	0.0	313	0.1	114	0.2	199	0.1	16,949	0.2
- 합자·합명회사	7	0.0	122	0.1	59	0.1	63	0.0	5,236	0.1
· 회사이외법인	10	0.0	201	0.1	68	0.1	133	0.1	20,857	0.3
· 비법인단체	-	-	-	-	-	-	-	-	-	-

자료: 통계청, 2005년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부표 3] 업종간 노동이동

(단위: 명, %)

		2000년 취업 업종					
		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전체	
		명	%	명	%	명	%
최종 일자리 업종	농림어업	58	0.2	25	0.2	83	0.2
	광업	13	0.1	1	0.0	14	0.0
	제조업	3,466	13.6	1,752	15.2	5,218	14.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0	0.0	11	0.1	21	0.1
	건설업	605	2.4	280	2.4	885	2.4
	도매 및 소매업	2,219	8.7	1,483	12.8	3,702	10.0
	숙박 및 음식점업	12,482	48.9	3,811	33.0	16,293	44.0
	운수통신업	764	3.0	376	3.3	1,140	3.1
	금융 및 보험업	187	0.7	167	1.4	354	1.0
	부동산 및 임대업	540	2.1	228	2.0	768	2.1
	사업서비스업	2,491	9.8	1,885	16.3	4,376	11.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94	1.2	125	1.1	419	1.1
	교육서비스업	535	2.1	505	4.4	1,040	2.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93	2.7	419	3.6	1,112	3.0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358	1.4	167	1.4	525	1.4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776	3.0	312	2.7	1,088	2.9
	가사 서비스업	8	0.0	2	0.0	10	0.0
국제 및 외국기관	2	0.0	0	0.0	2	0.0	
전체	25,501	100.0	11,549	100.0	37,050	100.0	

[부표 4] 직종간 노동이동

(단위: 명, %)

		2000년 직종						전체	
		관리직/(주)전문가		사무/판매직		기능/단순노무			
		명	%	명	%	명	%	명	%
최종 일자리 직종	관리직/(주)전문가	621	26.8	4,122	16.0	1,048	11.8	5,791	15.6
	사무/판매직	1,182	50.9	15,125	58.6	4,115	46.1	20,422	55.1
	기능/단순노무	517	22.3	6,565	25.4	3,755	42.1	10,837	29.2
전체		2,320	100.0	25,812	100.0	8,918	100.0	37,050	100.0

## 참고문헌

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통계」, 2007. 6(내부자료).

노동부, 『고용허가제업무편람』, 2006.

법무부, 「외국인력 체류현황」, 2007. 10(내부자료).

박성재, 「비자발적 이직자 추이」, 『월간 노동리뷰 2007년 7월호(통권 제31호)』, 한국노동연구원, 2007. 7.

유길상 외,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3.

유길상·어수봉·박영범·박성재,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연구』, 노동부, 2007. 10.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외국인력 노동시장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이병희·정재호, 『노동이동과 인력개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한국고용정보원, 『2006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2006.

한국노동연구원, 『2007 KLI 노동통계』, 2007. 7.

경향신문, 2007. 10. 5.

한겨레신문, 2007. 2. 8.